

의안번호	2209599
의 퇴 인	김윤덕 의원
회 답 일	2025. 4. 28.
추계번호	25C1919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4조(신경인지장애 환자의 비용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현행: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만 명시	재량규정
2	안 제15조(신경인지장애 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행: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만 명시	의무규정
3	안 제17조(사회참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취업·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안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4	안 제18조(지역사회 거주·치료·돌봄 등 통합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안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5	안 제19조(전문인력등의 양성·훈련)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 및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함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안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0조(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관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5조(신경인지장애 돌봄기관의 지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신경인지장애 환자의 비용 지원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신경인지장애 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안 제17조(사회참여 지원)	
4	안 제18조(지역사회 거주 · 치료·돌봄 등 통합 지원)	
5	안 제19조(전문인력등의 양성·훈련)	
6	안 제20조(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등)	
7	안 제25조(신경인지장애 돌봄기관의 지정)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관련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존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가 동일하므로, [표 1]에 정리된 조항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음

[표 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현행법의 유사조항 비교

개정안	현행법
제5조(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10조(신경인지장애실태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1조(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2조(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3조(역학조사)	제14조(역학조사)
제16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21조(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22조(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23조(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24조(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26조(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의 지정)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27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29조(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현행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9)을 참고하여 재작성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거나 신규로 추진할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신경인지장애환자의 돌봄(안 제14조), 가족(안 제15조), 취업·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안 제17조),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안 제18조) 지원과 전문인력 등의 양성·훈련(안 제19조), 돌봄 기관 지정(안 제25조)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